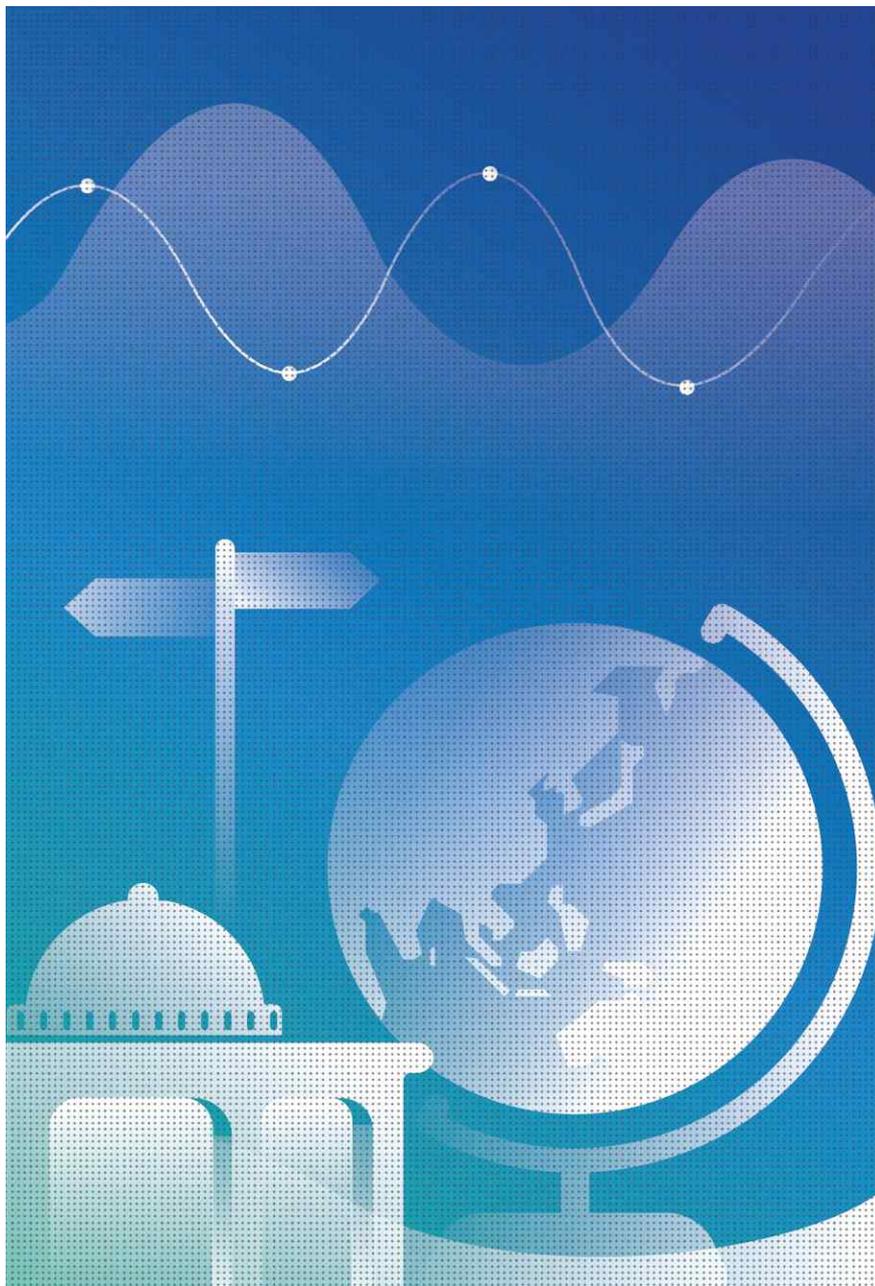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18-지역이슈-5(2018.12)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CONTENTS

- I.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 등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II. 미국의 대러 제재 내용
- III. EU의 대러 제재 내용
- IV.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조치 법률 발효
- V.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관련 사례

작성

변호사 류혜정 / 법무법인(유한) 지평
hjryu@jipyong.com



I.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 등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2014년 3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으로 개시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이하 '대러 제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음. 현재 미국, EU, 일본, 캐나다, 유럽,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등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의 대러 제재는 2017년 8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통합적인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에 서명한 이후, 2018년 들어 4월 6일 United Company RUSAL PLC(이하 'Rusal')과 EN+ Group PLC(이하 'EN+') 등 제재대상자 추가, 영국 시민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에 대한 암살 기도(생화학 무기 사용)에 관한 8월 6일자 국무부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 위반 결정 및 8월 27일 추가 제재, 2018년 9월 20일 CAATSA에 따른 행정명령 제13849호 발령, 11월 8일 Sberbank가 보유한 Garant-SV 등 제재대상자 추가 등으로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 수단도 강화하는 추세임. 현재 대러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40개 이상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임.
- EU는 소속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단위로 대러 경제제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제재를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다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던 중 영국 시민에 대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 등이 발발함에 따라 추가 제재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음.
- 대러 제재가 개시된 2014년에는 유가 하락과 맞물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세로 접어들었음.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2018년 초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되는 등 러시아 경제에 서방의 제재가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러시아가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는 대러 제재가 개시된 직후 EU로부터의 특정 제품 반입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2018년 6월 4일에는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정부나 기관,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미국 및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대응법(이하 '제재대응법')을 제정함.
- UN은 대러 제재를 결의한 바 없고, 한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음. 대러 제재는 이란이나 북한 등에 대한 제재와 달리, 특정 분야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별적 제재의 특성을 가지고 제재 당사국의 기업이나 국민을 수범자로 함. 한국은 제재대응법상 대러 제재당사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나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대러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 다만, 미국의 CAATSA는 제재 목적상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 달러화 기반 청산-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러 제재에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를 하게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실제로 한국의 금융기관 또는 한국이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은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기업이 거래상대방이거나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미국 대러 제재 위반의 위험성을 들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II.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내용

1. 개요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제재 관련 행정 명령을 근거로 특별지정제재대상자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이하 'SDN List')을 작성하여, SDN List 등재자(이하 'SDN 등재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SDN 등재자와 미국인 간의 또는 SDN 등재자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OFAC은 행정명령 제13662호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금융 서비스, 에너지, 금속, 광업, 엔지니어링, 군수 산업 관련 분야별 제재대상자 목록(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List, 이하 'SSI List')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SSI List 등재자(이하 'SSI 등재자')와의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에 따라 미국산 제품/소프트웨어의 대 러시아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표 1]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 진행 경과

	일 자	내 용
2014년	3월 6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0호 공포
	3월 16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1호, 제13662호 공포
	3월 17일	SDN 등재자 발표
	3월 20일, 4월 11·28일, 6월 20일	SDN 등재자 추가 발표
	7월 16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 지침(Directive) 1·2 공포, SSI 등재자 발표
	9월 12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 지침 1·2 개정 및 3·4 공포, SSI 등재자 추가 발표
	12월 19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85호 공포
2015년	3월 11일	SDN 등재자 추가 발표
	12월 22일	SDN/SSI 등재자 추가 발표
2016년	11월 13일	SDN 등재자 추가 발표
	12월 20일	SDN/SSI 등재자 추가 발표
2017년	6월 20일	SDN/SSI 등재자 추가 발표
	8월 2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발효
	9월 29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 지침 1·2 개정
	10월 31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662호 지침 4 개정
2018년	1월 26일	SDN/SSI 등재자 추가 발표
	3월 15일, 4월 6일, 6월 10일	SDN 등재자 추가 발표
	8월 27일	1991년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중식법(CBW Act)에 따른 신규 제재
	9월 12일	선거개입과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48호 공포
	9월 20일	CAATSA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49호 공포,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입 관련 2차 제재 및 SDN 등재자 추가 발표
	11월 8일	SDN 등재자 추가 발표



2. 주요 내용

□ OFAC 제재

- 원칙적 적용 대상

- 미국인(US Person)에 의하여,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
- 미국인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entity, 해당 법인 등의 해외 지점 포함), 미국에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포함됨. 한국 국적이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미국 법인(미국 지점 포함)도 미국인에 해당함.
- 거래당사자가 미국인이 아니라 해도,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됨.
- 미국인 및/또는 미국 내 거래가 아니라 해도,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거래 행위 조건(정황/배경) 및 효과(결과)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knowingly), SDN/SSI 등재자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용이하게 한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SDN List

- SDN 등재자의 ①미국 내 자산 및 수익자산과 해외지점을 포함한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며, ②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과 SDN 등재자의 자산 및 수익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거래가 제한됨.
- SDN List에 등재되지 않았다 해도, 1인 이상의 SDN 등재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SDN 등재자와 동일하게 미국 내 자산 및 수익 자산이 동결되며, 자산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거래가 제한됨. 50% 룰이 적용되면 SDN 등재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SDN 등재자의 50% 이상 지분 소유가 인정된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도 SDN 등재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

- SSI List

- ①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와 SSI List 등재자가 거래하는 경우, ②SSI List 등재자와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표 2]의 거래 제한이 적용됨. SSI 등재자에게도 50% 룰이 적용되지만 SSI 등재자의 자산은 동결되지 않으며, [표 2]의 특정 거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래 자체는 제한되지 않음.

[표 2] SSI List 등재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요 제재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Directive 1	금융서비스 분야 기관(단체)과의 금융거래 제한	①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와 SSI List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기관 간 거래시 / ②SSI List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기관과 미국 내에서 거래시 : 만기 14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Directive 2	에너지 분야 기관(단체)과의 금융거래 제한	①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와 SSI List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간 거래시 / ②SSI List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미국 내에서 거래시 : 만기 60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구 분		주 요 내 용
Directive 3	방위산업 분야 기관(단체)과의 금융거래 제한	①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와 SSI List에 포함된 러시아 방위산업 기업 간 거래시 / ②SSI List에 포함된 러시아 방위산업 기업과 미국 내에서 거래시 :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Directive 4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 거래 제한	①SSI List에 등재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러시아 영해 내에서의 심해(deepwater), 북극해 연안(Arctic offshore), 셰일(shale)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인의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 제공, 수출, 재수출 금지 ②SSI List에 등재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i)33% 이상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ii)5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심해, 북극해 연안, 셰일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2018년 1월 29일을 기점으로 미국인의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 제공, 수출, 재수출 금지

□ BIS 제재

- OFAC의 SDN/SSI List와는 별도로, 미 상무부 산하 BIS도 수출 통제를 통한 대 러시아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BIS는 EAR에 따라 ①러시아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할 목적으로(BIS List 등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EAR 적용 대상인 특정 미국산 제품 및 기술(이하 '제품')을 수출,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②BIS 등재자(석유 개발 프로젝트 사용 목적은 중요하지 않음)에게 EAR 적용 대상인 모든 제품을 수출, 재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license)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적용 대상
 - BIS 제재 프로그램은 OFAC과 달리 적용 대상을 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외국법인도 EAR 적용대상 제품을 러시아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 또는 BIS 등재자에게 수출, 재수출 또는 역내 거래(in-country transfer)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러시아 석유 개발 프로젝트 사용 목적에 따른 제재(15 CFR 746.5)
 - EAR 제746조 부록 제2호 목록에 포함된 제품 및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s, 이하 'ECCNs') 0A998, 1C992, 3A229, 3A231, 3A232, 6A991, 8A992 및 8D999에 포함된 제품¹⁾을 수출, 재수출, 역내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①해당 제품이 러시아 영해 내의 심해(deepwater), 북극해연(Arctic offshore), 셰일(shale) 석유·가스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될 목적임을 알고 있는 경우 ②그와 같은 석유·가스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때에는 반드시 BIS의 수출 승인(license)을 취득해야 함.

1) 러시아 산업분야별 제재규정에 따라 수출, 재수출, 국가 내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에는 굴착장치(drilling rig), 굴착 파이프(drill pipe), 수리학적 파괴(hydraulic fracturing)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석유·가스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술 등이 포함됨.



- BIS 등재자에 대한 제재(15 CFR 744.10)
 - EAR 제744조 부록 제4호 목록에 포함된 BIS List에 등재된 러시아 기업/단체에게 EAR 적용 대상 제품을 수출, 재수출하거나 해당 기업이나 단체와 역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BIS의 사전 수출 승인을 취득해야 함.
 - EAR의 적용 대상 제품은 ①모든 미국산 제품, ②제품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미국산 제품, ③미국산 제품과 혼합하여 제조된 외국산 제품, 미국 소프트웨어와 묶음(bundle)로 제공되는 외국산 제품,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혼합된 외국산 소프트웨어, 미국 기술과 혼합된 외국 기술 중 미국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최소 25% 이상 포함된 모든 제품, ④미국 기술, 소프트웨어로 직접 생산된 외국산 제품(direct products)으로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이 통제되지 않는 제품임
- BIS List와 SDN/SSI List 간의 관계
 - SDN/SSI 등재자가 모두 BIS List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실무적으로 OFAC이 SDN/SSI List를 추가/수정하는 경우 BIS도 이를 고려하여 등재자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2018년 11월 8일 SDN List에 추가된 등재자들도 BIS List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3. 최근 추가된 제재 내용 검토

□ 2018년 4월 6일자 추가 제재

- OFAC은 2018년 4월 6일 행정명령 제13661호, 제13662호, 제13582호 및 CAATSA에 따라 ①러시아 기업인 7인 및 ②그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업 12개, ③러시아 고위공무원 17인, ④러시아 국영 방산무기 수출회사와 그 계열 은행을 SDN List에 추가하였음.

[표 3] 2018년 4월 6일 SDN List에 추가된 제재대상자 및 선정 이유

구분	대 상	선정 이유
러시아 기업인(Oligarchs)		
1	Vladimir Bogdanov	• 러시아 석유회사 Surgutneftegaz의 대표이사 (Surgutneftegaz는 2014년 9월 SSI List에 등재)
2	Oleg Deripaska	• 러시아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활동 • 러시아연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업무 수행
3	Suleiman Kerimov	• 러시아 기업인
4	Igor Rotenberg	• 러시아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활동 • 아버지 Arkady Rotenberg가 SDN List에 포함된 직후 아버지로부터 Gazprom Burenie 지분 79% 포함 상당한 자산 상속
5	Kirill Shamalov	• 러시아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활동 • 푸틴 대통령의 사위, 러시아 석유개발회사 Sibur의 지분 보유
6	Andrei Skoch	• 러시아 기업인
7	Viktor Vekselberg	• 러시아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활동 • Renova Group의 창립자이며 이사회 의장



구분	대 상	선정 이유
러시아 기업인 소유 기업		
1	B-Finance Ltd.	• Oleg Deripaska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영국령 버진 제도 소재 회사
2	Basic Element Ltd.	• Oleg Deripaska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3	EN+ Group	• Oleg Deripaska, B-Finance Ltd., Basic Element Ltd.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회사
4	EuroSibEnerg	• Oleg Deripaska, EN+ Group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러시아 에너지 생산회사
5	United Company RUSAL PLC	• EN+ Group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회사
6	Russian Machines	• Oleg Deripaska, Basic Element Ltd.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7	GAZ Group	• Oleg Deripaska, Russian Machines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8	Agroholding Kuban	• Oleg Deripaska, Basic Element Ltd.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9	Gazprom Burenie LLC	• Igor Rotenberg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10	NPV Engineering Open JointStock Company	• Igor Rotenberg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컨설팅회사
11	Ladoga Menedzhment LLC	• Kirill Shamalov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12	Renova Group	• Viktor Vekselberg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회사
러시아 국영기업		
1	Andrey Akimov	• 러시아 국영은행 Gazprombank의 이사회 의장
2	Mikhail Fradkov	• 대통령 정책 연구기관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RISS)의 대표
3	Sergey Fursenko	• 러시아 국영기업 Gazprom의 계열사인 Gazprom Neft 이사
4	Oleg Govorun	• 독립국가연합 경제협력기구 대표
5	Alexey Dyumin	• Tula 지역 주 지사
6	Vladimir Kolokoltsev	• 러시아 내무장관
7	Konstantin Kosachev	• 러시아 외교위원회 의장
8	Andrey Kostin	• VTB Bank 대표이사
9	Alexey Miller	• Gazprom 대표이사
10	Nikolai Patrushev	• 러시아 안보위원회 비서실장
11	Vladislav Reznik	• 러시아 의회 의원
12	Evgeniy Shkolov	•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13	Alexander Torshin	• 국무장관,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14	Vladimir Ustinov	• 러시아 남-연방 특사
15	Timur Valiulin	• 러시아 내무부 소속 공무원
16	Alexander Zharov	• 러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17	Viktor Zolotov	• 러시아 국방부 장관



- 다만, RUSAL과 EN+, GAZ Group에 대해서는 적용예외에 관한 한시적인 승인이 있었고 이는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되었음. 2018년 11월 9일 5번째 연장조치로 2019년 1월 7일까지 적용예외에 관한 승인이 유효하게 존속함.
- 미 재무부에 의하면, RUSAL과 EN+, GAZ Group은 SDN List에서의 제외를 위한 지배구조 변동을 제안하고 있다고 함.

□ 2018년 6월 10일자 추가 제재

- OFAC은 2018년 6월 10일 행정명령 제13694호(상당한 규모의 악의적인 사이버상 행위와 관련된 특정인의 자산 동결 조치)와 CAATSA 제224조에 근거하여,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관련된 5개의 러시아 기업과 3인의 러시아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

[표 4] 2018년 6월 10일 SDN List에 추가된 제재대상자 및 선정 이유

구분	대 상	선정 이유
기업		
1	Digital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B에 대한 기술 및 물품 지원 • 2015년부터 FSB를 포함한 러시아 정보국의 사이버공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2	ERP Sc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gital Security의 피지배회사 • 2016년 8월부터 Digital Security의 자회사
3	Emb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부터 Digital Security의 피지배회사
4	Kvant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Kv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B가 실질적 소유 또는 지배 • 2010년 8월부터 러시아 정부가 FSB에 의해 관리되는 국영기업으로 인정 • FSB에 물품 및 기술 지원, 2015년 8월부터 FSB와 일정한 관계 유지, 2017년 4월부터 FSB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5	Divetechnoservices L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B에 물품 및 기술 지원 • 2007년 이래 FSB를 포함한 러시아 정부기관에 다양한 종류의 수중장비와 시스템 제공, 2011년 FSB에 1.5백만 달러 상당의 잠수정 기술 제공 계약 체결
러시아 기업인		
1	Aleksandr Trib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etechnoservice LLC 대표이사
2	Oleg Chirik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etechnoservice LLC 프로그램 매니저
3	Vladimir Kaganski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vetechnoservice LLC 소유주, 전직 대표이사

- OFAC은 2018. 3. 15. CAATSA 제224조에 따라 FSB를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FSB는 이미 2016. 12. 28. 행정명령 제13694호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음
- 2018. 6. 10. 추가 제재대상이 된 자의 미국 내 자산과 수익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은 또는 미국 내에서는 위 제재대상자와 원칙적으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음



□ 2018년 8월 6일자 국무부 발표 및 8월 27일자 신규 제재

- 2018년 3월 4일 영국에 망명한 러시아 출신 전직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가 영국 솔즈베리 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함. 영국 정부는 이들의 암살기도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였으나, 러시아는 전면 부인함.
- 8월 6일 미 국무부는 영국 시민인 스크리팔 부녀 암살 기도에 신경작용제 '노비츠크'이 사용된 사실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1991년 제정된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중식법(CBW Act)'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함
- 8월 8일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러 제재를 추가적으로 개시할 것임을 예고한 데 이어 8월 27일 CBW Act에 근거한 신규 제재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
 - 국가 안보와 관련된 품목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 및 재수출 금지 (Commercial Control List "NS 1"과 "NS 2")
 - 대외 원조, 무기 매매 및 관련된 금융조달, 미국의 신용지원 금지 (우주 협력 및 항공부품 공급 분야 등 일부 분야 제외)
 - 1차 제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 중단을 약속하지 않거나 유엔 조사팀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국영 항공사 Aeroflot의 미국 취항 금지 및 미국의 대러 수출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을 경고
 - 미 상원은 러시아 국채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 대형 은행에 대한 미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러 제재 법안을 준비
-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스크리팔 사건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발표와 제재 부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Atlas V 로켓용 RD-180 모터 공급 및 티타늄의 미국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고 제재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할 것을 예고함. 아울러 러시아는 중국 및 이란과 루블화 거래를 확대하여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하였음

□ 2018년 9월 12일자 추가 제재

- 선거 개입과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48호가 발표되었음. 동 명령은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정부의 개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를 은폐했거나 기타 방법으로 연루된 개인이나 기업, 이에 대한 지원 행위를 한 자, 또는 이러한 개인이나 기업이 지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 또한 Section 1과 3은 추후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개입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이나 기업에게 추가적인 제재 부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세부 시행조치는 OFAC이 관할함.



□ 2018년 9월 20/21일자 추가 제재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9월 20일 사이버안보, 방위/정보 분야 거래,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개발, 러시아 사유화 투자 또는 촉진 관련 CAATSA 2차 제재의 부과 및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 13849호를 공포하였음. 본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에게 규정의 공포를 포함하여 제재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조치의 종류를 명시함.
- 본 행정명령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부과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①미국의 금융기관이 12개월 내에 총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및 신용공여 기간 연장 금지, ②미국 관할 내의 외환거래 금지, ③미국 관할 내의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또는 금융거래 금지, ④미국인의 제재대상자에 대한 투자, 출자, 채권 구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같은 날, SDN 등재자인 Rosoboronexport로부터 2017년 10월 27일 이래 항공기 및 미사일을 구매한 중국 국영 군수기업 EDD(Equipment Development Department) 및 그 이사인 Li Shangfu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는 이유로 2차 제재를 부과받고 및 SDN List에 추가됨. 이는 CAATSA 제231조에 따른 최초의 2차 제재 부과임.
- 이어 2018년 9월 21일 미 상무부는 SDN 등재자 또는 잠재적 SSI 등재자(SSI 등재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직접 지배하는 기업) 중 일부인 12개 러시아 기업을 BIS 목록에 추가함.

□ 2018년 11월 8일자 추가 제재

-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합병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 화합, 민주주의, 경제 안정화 지원법(SSIDES) 및 제재통합법(CAATSA)에 근거, 러시아 관리와 기관 등이 제재대상자 리스트에 추가되었음. 제재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인 2명과 러시아 관리 1명, 러시아 기관 9곳이 포함되었음.

[표 5] 2018년 11월 8일 추가된 제재대상자 및 선정 이유

구분	대 상	선정 이유
개인		
1	Aleksandr Bas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한스키인민공화국(LPR) 안보국 차관 • 크림 반도 강제합병에 관한 책임
2	Andriy Sushk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공무원 (FSB) • 크림 반도 강제합병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지시, 관리
3	Vladimir Zarits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C UKIP 창립자
기관		
1	Joint Stock Company Sanatorium Ay-Pet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림 반도 알타 소재 호텔 • 불법적으로 국영화됨 (현재 LLC UKIP 소유)
2	Joint Stock Company Sanatorium Dylber	
3	Joint Stock Company Sanatorium Miskhor	
4	Krymtets, A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개발 및 전송시설 운영 • 크림 반도 내 전력 개발 계획 수립



구분	대 상	선정 이유
기관		
5	Limited Liability Company Garant-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9월 12일 SSI 목록에 포함된 Sberbank 소유 • 크림 반도에서 사업활동
6	Limited Liability Company Infrastructure Projects Management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림 반도에서 운영되는 건설업체
7	Limited Liability Company Southern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3월 20일, 행정명령 제13661호에 의해 자산이 동결된 Bank Rossiya 및 그 회장인 Yury Kovalchuk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됨
8	Ministry of State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한스키인민공화국(LPR) 안보국 • 크림 반도 강제합병 관련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
9	Mriya Resort & S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C GARANT-SV에 의해 운영

4.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 내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방산기업, 에너지 기업 또는 SDN 등재자를 대리하거나 이를 위하여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facilitate) 한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e)에 대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거래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DN/SSI 등재자 또는 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를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거나, 기만적 또는 조직적인 거래를 한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OFAC에 따르면, 해당 거래 및 금융거래가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인지 여부는 거래와 관련된 사실 및 거래 전반에 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①거래 규모와 횟수, ②거래 성격, ③경영진의 인식수준 및 해당 거래가 지속적, 반복적 거래의 일부였는지 여부, ④해당 거래와 제재대상자 간의 관계, ⑤해당 거래가 법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⑥거래에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⑦기타 개별 거래별로 재무장관에 의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또한,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①통화, 금융상품, 유가증권 또는 기타 가치의 제공, ②구매, 판매, ③운송, ④교환, ⑤중개, ⑥자금 조달, ⑦승인, ⑧보증, ⑨기타 서비스의 제공, ⑩노무의 제공, ⑪소프트웨어, 기술 및 기타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 및 거래에 대한 모든 지원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음.



Ⅲ. EU의 대러 경제제재 개요

1. 개요

- EU 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 규정 제833/2014호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음. EU의 대러 경제제재는 EU 국적의 시민 및 기업의 행위일 것, 또는 EU 영토 내에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졌거나 EU에 등록된 항공기나 선박과 관련되었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함. 제재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8년 7월 5일에 적용기간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2014년 3월 17일 규정 제269/2014호로 SDN List와 유사한 Blacklist가 발표되었고, 이후 Siemens 터빈 스캔들²⁾과 케르치 대교 건설 관련자³⁾ 등이 제재대상에 추가되었음. EU의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Blacklist는 2019년 3월 15일까지 유효함.
- 크림 반도 사태와 관련하여, EU 위원회는 2014년 6월 23일 규정 제692/2014호로 특정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함. 동 제재는 석유·가스 및 기타 광물에 대한 개발, 전력, 운송, 통신에 대한 투자 제한, 기타 특정 부문에 대한 사업상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함. 해당 조치는 2019년 6월 23일까지 유효함.
- 스크리팔 부녀 암살기도 사건 이후 EU 또는 영국은 러시아에 대해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2. EU의 부문별 제재

- EU의 부문별 제재는 금융, 에너지, 이중용도/군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가스 분야의 프로젝트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러시아 외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석유가스 프로젝트도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음. 이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대출이나 신용공여에 수반하는 단순한 중개업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영기업 외에 주요 사기업이나 그 CEO 등은 Blacklist에 등재되지 않음.
-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에서 개인 또는 기업에게 Annex II에 명시된 품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도, 공급, 이전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의 제공, 기술지원이나 금융지원도 금지되며, 행위자가 설립된 EU 구성국가의 관할 정부기관이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함.

2) EU는 2017년 8월 4일 독일 Siemens사의 가스 터빈 4대가 크림 반도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사실과 관련하여 개인 3명과 단체 3곳을 제재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한 가스 터빈이 크림 반도로 밀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자 Siemens사는 2017년 7월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러시아 국영기업에 대한 발전설비 인도를 중단함.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Siemens사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EU는 2018년 7월 31일 케르치 대교(또는 크리미아 대교)의 건설과 관련된 6개 법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함. 케르치 대교는 케르치 해협을 가로질러 러시아 본토인 타만 반도와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대교로, 2014년 크림 반도 위기 이후 2015년 5월 착공되어 2018년 5월 15일에 도로교가 개통되었음. 케르치 해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아조프해의 유일한 통로로, 2018년 11월 25일 양국 간 위기를 고조시킨 무력충돌 및 우크라이나 선박 나포 사건도 케르치 대교 인근에서 발생하였음.



- 다만, 이러한 제재는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적용예외에 관한 승인을 받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함. 또한 EU는 미국과 달리 50% 룰을 두고 있지 않으며,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확대 적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는 ①에너지(군수)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출거래 또는 지분증권 거래나 증권의 발행 지원, 투자서비스 등을 금지하고, ②러시아 금융기관과 위와 같은 거래나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③특정 에너지(군수) 기업 및 러시아 금융기관(3개 에너지 기업, 5개 금융기관, 3개 군수기업)과 만기 30일 이상의 신규대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단순한 중개업무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EU의 크림 반도 지역에 대한 제재 및 Blacklist 제재

- EU 규정 제692/2014호는 크림 반도 지역에 설립된 법인이나 거주하는 개인에게, 또는 크림 반도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Annex II에 명시된 품목을 매도, 공급, 이전, 상품 수출 및 기술이전하는 것을 금지함. 금지대상에는 석유·가스,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나 개발, 운송, 통신, 전력 부문이 포함되며, 금융, 기업 인수, 합작, 부동산 투자, 설계, 건설, 투자 서비스, 관광 서비스 등의 제공도 일반적으로 금지됨.
- 다만, 2017년 9월 Blacklist 규정의 개정으로 크림 반도 지역의 항만에 대한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2018년 7월 크림 반도 지역 관광 목적의 예약 서비스 제공은 제재 범위에서 제외됨.
- 한편, EU의 Blacklist 제재는 2014년 3월 17일 규정 제269/2014호로 공표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업데이트되었음. Blacklist에 등재된 자의 자산은 동결되며, Blacklist에 등재된 자 및 그가 보유한 자산에 관련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됨.



IV.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조치 법률 발효

1. 개요

-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 하원은 2018년 4월 13일 '미국 및/또는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41399-7호)을 발의하였음. 본 법률안은 2018년 5월 22일 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상원 심사를 거쳐 2018년 6월 4일 푸틴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연방법률 제127호(이하 '제재대응법')로 발효되었음

2. 제재대응법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 대상
 - 제재대응법은 미국 및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인 행위로부터 러시아, 러시아 국민, 러시아 법인 관련 러시아연방의 이익과 안보, 자주권, 영토통합,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제재대응법은 러시아, 러시아 국민, 러시아 법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위를 하는 미국 및 기타 외국(이하 '비우호적 외국')을 겨냥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비우호적 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 임원,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임. 다만, 이러한 기업이나 단체, 임원, 국민이 러시아연방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구체적인 대응 조치 적용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러시아에서 유사품이 생산되지 아니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비우호적 외국으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반입 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러시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가 개인 용도로 러시아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우호적 외국으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제품 및/또는 원료의 반입 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대응 조치
 - 제재대응법은 우선적으로 미국 및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외국에게 우선 적용됨. 다만, 동법은 비우호적 외국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기업), 비우호적 외국 국가의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 임원이나 해당 국가의 국민도 경우에 따라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재대응법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 대통령 및 정부에게 구체적인 제한/금지/중단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한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러 제재에 참여하거나 미국의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음. 다만 제재대응법에서는 '비우호적 외국의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있거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단체)'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특정 한국 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V.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과 관련 사례

1. 한국 기업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 미국의 대러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 내에서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EU 제재나 그 밖의 국가의 대러 경제제재 역시 자국민을 수범자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이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다만, ①대러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목적의 거래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개입하는 경우, ②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 및 물품 지원 등 프로젝트에 SSI 등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참여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러시아의 민영화에 참여하는 경우, ③BIS 등재자에게 또는 러시아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목적으로 EAR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출, 재수출하거나 역내 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OFAC은 중개은행에 대해서도 미국 내 시스템을 통한 거래로 보아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SDN 등재자나 SSI 등재자(50% 룰 고려)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될 경우에는 미 달러화 송금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CAATSA에 저촉하여 2차 제재 대상이 된 사례가 "상당한 규모"의 무기 거래에 관한 중국 국영 기업 EDD 및 그 이사인 Li Shangfu에 대한 2018년 9월 20일자 제재 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제재에 관한 규정의 포괄성과 모호성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들은 대러 제재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SSI 등재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 거래에 한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SSI 등재자로 확인되면 거래 내용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2차 제재 위험을 이유로 들어 지급 또는 수령이나 중개,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함.
- 그러나 동시에 SDN 등재자 또는 SSI 등재자가 아니어도 50% 룰이 적용될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데, SDN 등재자나 SSI 등재자가 아닌 것만 확인되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속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2. 한국 기업의 유의사항과 관련 사례

- 미국의 대러 제재는 그 근거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제재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시로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 또한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재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현재까지 대러 제재 관련 2차 제재 부과 사례는 무기거래에 관한 중국 국영기업 1건이 유일하지만,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차 제재에 관한 판단기준 모호성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투자 방식과 구조,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후, 거래상대방이 SDN 등재자인지, SDN 등재자가 지배하는 법인일 가능성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SDN 등재자 여부는 OFAC의 제재 목록 통합 검색 시스템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SDN List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50% 룰에 의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대한 공개정보를 통해서,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 확인 등을 통해서 지배주주를 확인해야 함.
- 러시아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겸직도 많은 만큼, 대표이사나 이사가 SDN 등재자인지, 아니면 SDN 등재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OFAC은 언론 보도 등 공개정보를 통해 기업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론 보도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음
- 거래상대방이 SDN 등재자라 해도 적용예외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예외 승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SDN 등재자는 아니지만 SSI 등재자인 경우, 투자구조와 대상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함. 투자 분야가 석유 개발이나 생산 프로젝트인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러시아 기업이 보유한 지분 규모는 어떠한지, 거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중개무역에서 거래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이고 제조자가 SDN 등재자의 자회사임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어 외국 금융기관이 L/C 거래를 거절하고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고의성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위에서 본 것처럼 상당한 규모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료하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므로, 2차 제재 위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미국의 대러 제재는 지속적으로 추가 또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차 제재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 기업과 또는 러시아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에 제재 부과 위험이 없음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 및 보장을 명시하고, 제재 확대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해지 사유, 불가항력/ 손실보전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4)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